

건설기계 양도증명서(당사자 거래용)			
<p>본인은 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권 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 2항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합니다.</p>			
양도인		년 월 일 (인감날인 또는 서명)	
건설기계등록번호			
기 종 및 형 식			
차 대 번 호			
매 매 일 자			
매 매 금 액			
비 고			
<p>제1조 (당사자표시) 양도인을 “갑”이라 하고, 양수인을 “을”이라 한다. 제2조 (동시이행 등) “갑”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“을”에게 인도하기로 한다. 제3조 (하자담보책임) “을”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“갑”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. 제4조 (사고책임) “을”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. 제5조 (법률상의 하자책임) 건설기계 인도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사항변 경신고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“갑”이 그 책임을 진다. 제6조 (등록지체책임) “을”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안에 등록사항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“을”이 진다. 제7조 (양도증명서)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1통씩을 소 지하고 “을”은 이를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는 때[매매일(잔금지급일)부터 30일 이 내]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특약사항 :</p>			
양도인(갑)	성명(명칭)	①	주민(사업자, 외국인)등록번호
	주 소	(전화번호 :)	
양수인(을)	성명(명칭)	①	주민(사업자, 외국인)등록번호
	주 소	(전화번호:)	
<p>※ 주의사항</p> <p>1. 양도인 주의사항 :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양수인 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2. 양수인 주의사항 :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이 건설기계에 대하여 압류·근 저당설정 등을 확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3. 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,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 니다.</p>			